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공무원 등 근로자의 노무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병역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심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한시정원 1명(5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렬을 복수직렬로 신설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면서 국가보훈처 대변인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가보훈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인 국립이천호국원과 보훈지청의 정원을 상호 이체하며, 결원이 발생한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20. ~ 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11”을 “3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8”을 “310”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0”을 “41”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를 “3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18”을 “3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5”를 “317”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0”을 “41”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를 “33”으로 한다.

별표 9의2 중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2”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79”를 각각 “884”로 하고, 행정주사·공

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22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23”을 “122”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22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5”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35”를 “236”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9”를 “18”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83”을 각각 “888”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22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1”을 “13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0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5”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19”를 “22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9”를 “18”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3”을 각각 “56”으로 하고, 행정주사 “7”을 “10”으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5”를 각각 “58”로 하고, 행정주사 “7”을 “10”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5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5월 31일”을 “2023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별표 14]

국가보훈처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보훈심사위원회) ①·② (생략) ③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수발·통제·관리총괄 2. ~ 11. (생략) ④ ~ ⑥ (생략)	제19조(보훈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접수·발송 ----- ----- 2. ~ 11.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대군인국장 및 <u>대구지방보훈청장</u> 을 말한다. ② (생략)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 ----- <u>대변인</u>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한시정원) ①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u>2021년 2월 28일</u> 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처에 두며, 별표 1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	제24조(한시정원) ① ----- ----- ----- ----- <u>2023년 2월 28일</u> ----- ----- ----- -----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생략) 총리령 제15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총리령 제147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2명(행정주사무관 1명)은 <u>2021년 5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 ----- ----- -----. ②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5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 ----- ----- ----- <u>2023년 5월 31일</u> ----- -----.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11</u>	<u>313</u>	+2
·	·	·	
·	·	·	
일반직 계	<u>308</u>	<u>310</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	<u>40</u>	<u>41</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32</u>	<u>33</u>	+1
·	·	·	
·	·	·	

[별표 3의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18</u>	<u>320</u>	+2
·	·	·	
·	·	·	
일반직 계	<u>315</u>	<u>317</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	<u>40</u>	<u>41</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32</u>	<u>33</u>	+1
·	·	·	
·	·	·	

[별표 9의2]

국립이천호국원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3</u>	<u>2</u>	-1
<u>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10]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879</u>	<u>884</u>	+5
일반직 계	<u>879</u>	<u>884</u>	+5
·	·	·	
·	·	·	
<u>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u>	<u><신 설></u>	<u>1</u>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123</u>	<u>122</u>	-1
<u>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 사보</u>	<u><신 설></u>	<u>5</u>	+5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 기보	<u>235</u>	<u>236</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9</u>	<u>18</u>	-1

[별표 10의2]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83</u>	<u>888</u>	+5
일반직 계	<u>883</u>	<u>888</u>	+5
·	·	·	
·	·	·	
<u>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u>			
<u>주사·시설주사 또는 전</u>	<u><신 설></u>	<u>1</u>	+1
<u>산주사</u>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u>131</u>	<u>130</u>	-1
사보			
<u>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u>	<u><신 설></u>	<u>5</u>	+5
<u>사보</u>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	<u>219</u>	<u>220</u>	+1
기보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9</u>	<u>18</u>	-1

[별표 11]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3</u>	<u>56</u>	+3
일반직 계	<u>53</u>	<u>56</u>	+3
·	·	·	
·	·	·	
행정주사	<u>7</u>	<u>10</u>	+3
·	·	·	
·	·	·	

[별표 11의2]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5</u>	<u>58</u>	+3
일반직 계	<u>55</u>	<u>58</u>	+3
·	·	·	
·	·	·	
행정주사	<u>7</u>	<u>10</u>	+3
·	·	·	
·	·	·	